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rch 18<sup>th</sup>,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뉴질랜드: Amount B 미채택

2024년 2월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지 자국 내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해 간소화 및 표준화된 적용 방식(이하 "Amount B")을 발표했으며, 이는 OECD 이전가격 지침에 포함되었습니다.

- **접근 방식:** 기존의 이전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특정 요구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으며, OECD는 해당 방식이 모든 관할권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적용 옵션:** 국가는 1) 규칙 미적용, 2) 적격 활동에 대해 선택적 적용, 3) 적격 활동에 대해 의무적 적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의 입장:**
  - 뉴질랜드는 Amount B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뉴질랜드의 현행 이전가격 규정이나 관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 즉, 소규모 외국 도매 유통업체에 대한 기존 단순한 분석방법은 계속 적용 가능하며, 그 외의 모든 다른 경우에는 기존의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됩니다.

- **문서화 및 패널티:**

- 뉴질랜드에서는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외국 소유 기업이 뉴질랜드 활동에 대해 Amount B를 적용하는 경우 불이익(penalties)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그룹이 Amount B를 적용하는 관할 구역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현지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해 뉴질랜드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 기존 이전가격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및 이전가격 조정:**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할 당국 간의 협상에서 Amount B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 배경:** 뉴질랜드는 OECD 원칙에 기반한 성숙한 이전가격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Amount B 채택으로 인한 추가 비용 대비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Regional headquarters(“지역본부”)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 발표**

2024년 2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관보에서 지역본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는 장관급 결의안이 발표 및 발효되었습니다. 적격 지역본부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0%: 적격 소득에 적용
- 원천징수세 0%: 비거주자, 특수관계인 및 지역본부 활동에 필요한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급한 배당금에 적용

단,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지역본부는 특정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행 활동에 대한 유효한 라이선스 보유
  - 허가된 범위 내로 활동 제한
  - 사업활동에 적합한 사우디 내 적절한 사업장 보유
  -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전략 이사회 개최를 포함한 활동을 지휘 및 관리
  - 지역본부 활동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지출
  -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적격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소 한 명의 이사 거주
  - 지역본부 직원의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
-

세제혜택은 지역본부 라이선스 발급일로부터 30년(갱신 가능) 동안 적격활동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단, 어떤 이유든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지역본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은 조기에 종료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혜택을 받는 지역본부는 여전히 법인세법 요건에 따라 연간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제적 실질 요건을 준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 세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역본부는 최대 SAR 400,000(약 98,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 번째 과태료 이후에도 미준수가 지속될 경우 세제혜택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서 8133 (2024.1.26)

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법 제 52 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경정)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플랫폼 사업부문[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 OOO(온라인거래 플랫폼), OOO(위치기반 디지털맵) 등]을 물적분할하여 aaa 주식회사(이하 "aaa")를 설립함
- 청구법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aaa와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계약(이하 "ASP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통신과금서비스 매출액의 30%를 aaa에게 지급하고 있음 (청구법인 70%, aaa 30%)
-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시스템 운영 용역대가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시스템 운영 용역 대가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물적분할 및 수익배분 비율 산정의 경위] 휴대폰소액결제 사업은 물적분할 이후에도 공동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점, 유사한 거래 사례를 고려하여 수익배분 비율을 결정한 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ASP 서비스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은 플랫폼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나, 고객DB 및 청구수납 등은 이전이 불가능하여 aaa 단독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였고, 분할 당시 시장상황이 휴대폰소액결제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체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해당 사업을 함께 할 전문적인 업체는 aaa 뿐이었음. 이에 두 법인은 ASP 계약(수익배분방식 7:3)을 체결하여 사업을 공동운영함</li> <li>-공동사업 시 수익배분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가 산정방식이며, 7:3 비율 협의 시에도 청구법인과 제3자 사이의 유사 ASP거래의 수익배분비율(중위값 33%)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li> </ul>	<p>청구법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의 주체로서 이용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aa로부터 ASP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공동사업이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은 이용자에게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해당 약관에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을 명확히 하고 있음</li> <li>- ASP 계약서 상에서도 aaa는 청구법인이 주체인 통신과금서비스사업을 위하여 ASP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li> </ul>
<p>[처분청 측 시가 산정의 부당성] 처분청은 aaa를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로 보아 원가보상 방식으로 시가산정하였으나, 이는 해당 사업에서 aaa의 지위 및 동종업계 대가 산정방식 등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므로 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청은 전문 용역에 대한 단순 하청관계에 주로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ASP 거래에 소요된 원가에 수익률을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li> <li>- 그러나 처분청의 시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잘못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법인과 aaa의 관계를 하청관계로 오인함 (업무분장 상 공동사업관계이며, aaa 또한 대외적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임)</li> <li>2) 원가보상방식이 동종-유사 업계의 용역대가 책정 실태에 반하는 점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결제대금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됨)</li> <li>3) ASP 거래는 엔지니어링사업이 아니므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li> </ol> </li> </ul>	<p>청구법인이 aaa에 지급한 ASP 수수료는 ASP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aaa의 역할, 자산, 책임 대비 과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은 ASP 서비스가 기업이 직접 고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임대서비스이므로 매출액의 30%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잘못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aa의 AS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무형자산금액이 낮아 중요도가 매우 낮음</li> <li>2) ASP 사업부문 구분손익의 영업이익률이 87%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유무형자산의 중요도와 aaa의 역할 및 위험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음</li> <li>3) aaa가 ASP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하는 역할은 각종 업무보고, 청구법인의 요구사항 수용 정도에 불과함</li> </ol> </li> </ul>
<p>[시가] 유사 거래 사례의 수익배분 비율을 고려할 때 시가에 부합</p>	<p>조사청이 산출한 시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및 관련 고시를 준용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유사사례에서 수익배분 방식을 취하면서 그 배분 비율로 7:3을 적용함</li> <li>- 제3자 간 공동사업에서도 수익배분 방식을 적용하며 7:3의 배분 비율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됨 (예: 앱/게임 등의 판매를 위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7(고객DB를 가진 KT) : 3(윈스토어 플랫폼 관리·운영사업자)'의 수익배분 비율을 적용함)</li> <li>- 과세관청이 산정한 '시가'가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함</li> </ul>	<p><b>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와 같이 aaa의 실제 역할은 오히려 ASP 서비스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li> <li>-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관련 고시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합산하여 대가 산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li> <li>- 조사청은 이에 따라 aaa의 ASP 사업팀 인원 5명의 인건비, 외주용역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출함</li> </ul>
--	---

#### 4) 판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하도급하였다는 전제하에서, 그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 일체를 물적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의 인적·물적설비는 모두 분할신설법인(aaa)에 이전되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사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물적분할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ASP 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증정보제공과 대행사 지급 전표발행 등 통신과금 정산업무만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그 외 통신과금서비스 및 ASP 서비스 운영관련 제반 업무는 aaa가 청구법인과 공동 또는 단독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단순히 통신과금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만을 하도급하였다는 전제를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움
- 또한,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은 사실상 독과점 거래이고,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해당 인적·물적설비를 모두 aaa에 이전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건 거래와 비교가능한 거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유사한 거래를 찾아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조사청은 aaa가 하도급업자로서 통신과금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전제하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나, aa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과금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뿐만 아니라 통신과금서비스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제3자에게 손해 발생 시 직접 배상할 책임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aaa의 역할을 엔지니어링활동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시가 산정방식은 부당해 보임
- 설령, 청구법인이 aaa에게 하도급을 하고 aaa의 역할이 엔지니어링활동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aaa에 지급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수수료를 매출액의 30%로 한 다수의 유사거래 사례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우리 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가 산정방식이나 처분청이 산정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거래 사례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료(수익률) 범위(20~40%) 중 가장 낮은 20%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시스템 운영 영역의 대가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03 관세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배경] 관세청은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공정·정확한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의견조회기간을 2024년 3월 15일, 시행을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

등 행정규칙은 관세조사 시 관세청의 요청 자료,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전가격)과 관련된 자료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확보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자료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제출 비협조자”)를 제7조에서 정의하며, 비협조자에 대한 패널티 규정을 제8조부터 1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출 비협조자(제7조)**

관세청은 자료제출 요청에 아래 행위를 하는 당사자를 제출 비협조자로 규정합니다.

- (1) 자료제출 지연

---

요청 자료 중 일부 자료 및 부수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관세조사 기간을 지연시키는 행위

**(2) 자료제출 거부**

제출자료가 영업비밀, 본사 정책 등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사의 ERP 시스템 접근 권한이나 등록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

**(3) 거짓 제출**

원보자료를 가공, 위조하여 이중 자료를 작성하거나 유리한 부문만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등의 거짓 자료 제출 행위

•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조치(제9조~19조)**

관세청은 위 비협조자에 대해 그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조사 중지 및 연장(제9조, 10조)**

관세청은 비협조자에 대해 관세조사 방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관세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제11조)**

관세청은 특수관계자가 이전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억원, 거짓 제출된 내용을 시정한 자료를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조사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관세조사 관련 직무 집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 계산서 미발급(제15조)**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특수관계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거래가격부인(제16조)**

과세가격 관련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대체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고발, 송치의뢰, 통고처분 (제17조)**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관세법 제1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송치의뢰 하거나 통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6) 그 외**

---

상기 외에 관세청은 비협조자에 대해 i)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ii) 월별 납부를 배제하거나, iii) 감사율 상향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KPMG 의견]

관세청은 위 행정규칙 신설을 통해 관세조사 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는 과거 관세조사 시 이전가격 관련된 과세 근거자료 부족에 따른 과세처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부터 강화된 관세조사 기조는 작년 부가세법개정 및 개정 단서조항에 따른 부가세 불공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규칙의 보완은, 관세조사대응 기업에 대한 사전 준비 및 관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사전협의 및 협력프로그램("AEO", "ACVA")을 통해 Risk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행정규칙의 시행 시, 관세청은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i)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대체평가로 과세 처분을 진행하거나, ii)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등을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